

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(1998. 12. 10 공포)

□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제출서류 간소화

- ▷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계획 승인신청서 산업자원부 및 시·도에 제출하는 공사일정표 등 17건의 서류 중 시공관리자서약서 등 10건을 폐지하고 7건만을 제출토록 함. (제12조 제2항)
- 도시가스시설 설치 후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자체검사기록 등 26건의 서류 중 공사대장 등 15건을 폐지하고 9건만을 제출토록 함. (제19조 제5항 및 제20조 제1항)

→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

-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·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 현행 3천만원 미만→1억원 미만

- ▷ 도시가스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시공관리자 1인이 2개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현행 직선거리 4km 이내의 기준 외에 동일한 시·군·구 지역에서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가능토록 조정함. (제16조 제2항)

□ 가스시설에 대한 중복검사제 완화

- ▷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사용자 공급관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시공감리(완성검사)와 도시가스사에 의한 입회확인의 중복으로 인한 시공사의 불편해소를 위해 50m 이상의 사용자 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의 입회를 제외토록 하고, 사용자공급관에 대하여는 상주시공감리로 전환함. (19조 제2항 및 제23조 제4항)

□ 가스누출검사의 주기 조정

- ▷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조건 또는 휴즈콕크, 가스누출자동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기의 설치 시 가스누출검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~3년으로 조정하여 가스안전기기의 보급을 유도함. (제47조 제3항)

□ 사용시설점검원의 채용인원 조정

- ▷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현행 일률적으로 3,000세대마다 1인씩 채용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설점검원의 수를 4,000세대마다 1인씩 채용할 수 있도록 함. (제47조 제7항)

□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정기검사주기 조정

- ▷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 중 도로 등에 매설되는 본관 및 공급관의 검사주기를 시공감리 완료 후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서 공사가 지정하는 날에 받도록 조정하고 시공감리대상에서 제외된 50m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등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. (제25조 제3항)

□ 건축물내 지역정압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점검주기 강화

- ▷ 95. 7. 31 이전에 건축물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에 대하여 가스누출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. (별표 6 제7호 가목)

□ 기술검토 처리기간 조정

- ▷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처리기간을 현행 7일 내에서 5일로 단축·조정하여 기술검토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함. (제12조 제6항)

□ 가스방출관의 설치기준 조정

- ▷ 정압기의 가스방출구가 전시기설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현행 5m에서 3m 이상으로 조정함. (별표6 제7호 자목 (1))

□ 공사금액별 시공관리자의 배치기준 상향 조정

- ▷ 도시가스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공사금액별 시공관리자 배치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함. (제16조 제1항·제2항)
- 가스기사 2급 이상, 고압가스 기능사 1급 이상 현행 2억원 이상 → 5억원 이상
- 고압가스기능사 2급 이상·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및 시공관리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현행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

□ 배관의 설치기준 완화

- ▷ 고압배관과 중압이하 배관을 인접 설치시의 이격거리를 현행 수평거리 2m 이상을 2m 이상 또는 콘크리트 방호구조물 내 설치시 1m 이상으로 조정함. (별표6 제8호 가목 (3) (라))
- ▷ 공급관을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배관용접, 고정장치, 강제통풍시설 등 안전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함. (별표6 제8호 가목 (3) (라))
- ▷ 폭 8m 미만 도로에서의 배관매설심도기준을 현행 1m 이상에서 폭 4m 미만 도로에서는 0.8m 이상으로 완화함. (별표6 제8호 가목 (4) (가) ③)